

재해개요

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(주)○○○○ 내부 도형·합형장에서 제품 몰드 내부에 들어가 도형제를 도포하는 작업 중 동료 작업자가 몰드 내부 건조를 위해 도형제에 토치로 불을 붙여 내부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전신 화상을 입음

재해상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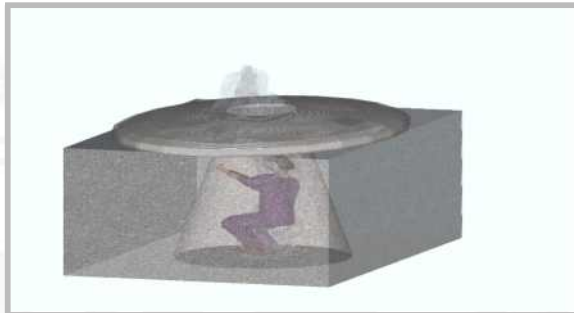
< 작업 주형 >



< 토치 >



<재해발생과정>



주형 내부로 들어가 도형제 도포작업 실시



동료 작업자가 토치로 주형 상부에 착화

재해발생원인

- 출입 금지조치 미실시
 - 도형제 도포작업 장소는 화재 위험 장소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함
- 관리감독자 유해·위험방지 업무 미실시
 - 위험물 취급 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총괄 지휘하여야 하나 실질적 관리가 실시되지 않음
- 위험물질(인화성 액체) 취급 작업시 조치사항 미준수
 - 도형제 도포작업(인화성물질 취급작업) 중에는 화기나 점화원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함

재발방지대책

- 도형제 도포장소 작업자 외 출입금지
 - 도형제 도포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
- 작업표준 수립 및 관리감독 철저
 - 도형제 취급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표준을 수립하고, 작업시 준수되도록 철저 관리
- 위험물질(인화성 액체) 취급 작업시 조치사항 준수
 - 도형제 도포작업(인화성물질 취급작업) 중 화기 및 점화원이 접근되거나 주입되지 않도록 관리